

-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-
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581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0.

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된 “대구어린이교통랜드”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. 2.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
- 나.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의거 민간위탁(재위탁)에 대한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 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, 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
 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사무 기준), 제5조(위탁사무 대상) 등
 - 추진 필요성
 - 공개모집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을 선정·활용함으로써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활성화 도모
 -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시비부담을 완화하고,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효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수성구 동대구로 176(어린이회관 내)
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4,958㎡, 건물 1,504㎡(지하1층, 지상2층)
- 주요시설

구 분	면 적	기 능	비 고
기계실, 전기실	153.79㎡	전기·소방시설, 발전기	지하1층
전시실	790.39㎡	교육 및 관람 시설	지상1층
영상관, 사무실	560.28㎡	3D 영상관 및 사무실	지상2층

라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1. 2. 7. ~ 2024. 2. 6.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민간위탁금 288백만원(' 20년 기준)
- 산출근거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구분	예산	내 용	
어 린 이 교통랜드 운 영	계	288		
	인 건 비	135	·인건비(4명) ·보험 및 퇴직금 부담금	119 16
	운 영 비	153	·일반운영비(공공요금, 여비, 부서운영) ·자산 및 물품구입비	147 6

〈어린이교통랜드 교육 및 관람 인원〉

구 분	교육횟수	교육인원	관람인원
2018년	351회	28,670명	48,522명
2019년	363회	28,822명	57,917명
2020년 8월	56회	1,424	7,735명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 1

나. 민간위탁 추진계획 : 붙임 2

붙임 1**관련 법령****【지방자치법】**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】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】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

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(사무편람)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【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】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시장" 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.

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
2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
3.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
 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 사실
 - 나.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, 관리·감독,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
4. 자치구별 균형분포
5.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6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
제14조(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

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·서류 등의 제출요구
2. 관계 공무원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
3.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

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,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8조(위탁계약 체결)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중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2.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
3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4. 수탁기관의 의무
5. 관리·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
6.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

7.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8.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
9.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-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붙임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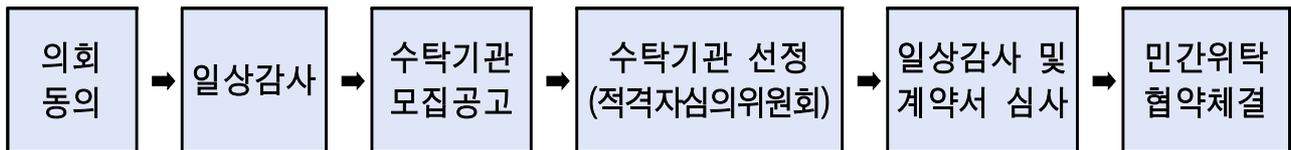
어린이교통랜드 민간위탁 추진 계획

I 추진 배경

- 추진배경 : 어린이교통랜드 민간위탁 기간 만료(2021.2.6.)
 - ※ 재위탁 기간 : '21. 2. 7. ~ '24. 2. 6.(3년)
- 재위탁 필요성 : 공개모집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을 선정·활용함으로써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활성화 도모

II 추진 방향

- 방 안 :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“민간위탁(재위탁)” 추진
 - ※ 재위탁 :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
- 방 법 : “공개경쟁”을 통해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내실화 도모
- 절 차



III 어린이교통랜드 현황

- 설치목적
 -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전시물과 영상물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 교육으로 교통사고 줄이기
- 시설현황
 - 위 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6(어린이회관 내)
 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4,958㎡, 건축연면적 1,504㎡(지하1, 지상2)

구 분	면 적	기 능	비 고
기계실, 전기실	153.79㎡	전기·소방시설, 발전기	지하1층
전시실	790.39㎡	교육 및 관람 시설	지상1층
영상관, 사무실	560.28㎡	3D 영상관 및 사무실	지상2층

IV 민간위탁 현황

○ 연 혁

- '05.12.15. : 어린이교통랜드 민간위탁동의안 가결(제145회 임시회)
- '06. 5.17. : 어린이교통랜드 개장
- '06. 2. 7. ~ '21. 2. 6. : 대구교통연수원 위탁운영(4회)

○ 위탁사무 :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
○ 위탁비용 : 민간위탁금 예산 범위 내 지원

〈'20년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금〉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구분	예산	내 용	
어 린 이 교 통 랜 드 운 영	계	288		
	인 건 비	135	·인건비(4명) ·보험 및 퇴직금 부담금	119 16
	운 영 비	153	·일반운영비(공공요금, 여비, 부서운영) ·자산 및 물품구입비	147 6

〈어린이교통랜드 교육 및 관람 인원〉

구 분	교육횟수	교육인원	관람인원
2018년	351회	28,670명	48,522명
2019년	363회	28,822명	57,917명
2020년 8월	56회	1,424	7,735명

V 세부추진 계획

1 수탁기관 모집

□ 모집공고 및 접수

○ 모집공고 개요

- 공고기간 : '20. 10월 중 15일 이상 공고

※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(7일), 재공고시에도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

⇒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 준용

- 공고방법 : 시 공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
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별관 교통정책과)

○ 제출서류

① 대구광역시 사무위탁신청서(소정양식) 1부

②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본(A4, 4매 이내) 각 1부

③ 법인·단체 소개서(연혁, 설립목적, 조직, 사업영역, 자산현황 등) 1부

- (법인) 등기부등본(법인 인감증명 첨부), 법인정관, 허가증 사본 각 1부

- (단체) 사업자등록증(최근 1개월 이내), 회칙,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

- (자산현황) 부동산, 동산, 예금 등 - 증빙서 첨부

④ 2019년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각 1부

⑤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(A4 10매 이내) 1부

⑥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 계획서 1부

⑦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, 자체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

⑧ 기타 사업계획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

○ 제출방법

- 위 제출서류 ②~⑧까지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용지 책자 10부 제출 (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)

- 파일제출 : 이메일(kimhd0898@korea.kr) 송부

□ 현장확인 및 설명회

- 공고문으로 같음하며, 별도 현장확인 및 설명회 생략

□ 신청자격 및 조건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,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, 전대, 재위탁 금지
-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유지·보수의무 부담
-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기존 직원 중 계속 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
- 관련 법령 및 위·수탁협약 사항 준수 의무
 - 기타 상세 위탁조건은 우리시와 수탁단체의 위·수탁협약으로 정함

② 적격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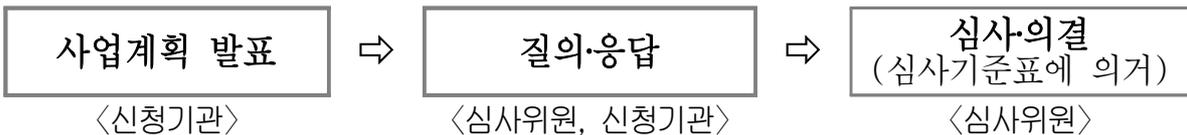
□ 선정방법 : “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” 심의를 통해 결정

□ 위원회 구성

- 위원회 구성 : 7명(위원장 포함)
 - 위원장 :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
 - 위 원 : 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(당연직 : 교통국장)
- ※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계획 별도 수립

□ 위원회 개최

- 일시/장소 : '20. 11월중/ 미정
- 심사방법 : 서류 및 발표(PT, 15분내외) 평가 후 적격자 선정
 - 다수 공모일 경우 : 심사기준표에 의거 세부항목별 심사
 - 심사위원별 채점, 총점 70점 이상 대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,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자 선정



- 단독공모일 경우(재공모) :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의결로 수탁기관 선정

○ 심사기준
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협상에 의한 체결기준)」을 준용, 사무의 성격에 따라 배점 등 조정

심사분야	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
합계			100
사업수행능력 (45)	운영기반	▶ 사업수행의 전문성	15
		▶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	10
		▶ 재무구조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	10
	시설관리 계획	▶ 시설·설비 관리계획의 적정성	10
사업추진 이해도 (35)	목적과 취지	▶ 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	20
	발전전략	▶ 운영 비전의 우수성	15
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(20)	예산집행 계획	▶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▶ 집행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	10
	지역협력 계획	▶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효과성	10

○ 선정발표

-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(1순위) 선정 개별통지
- 소정기일 내 협약 체결하며, 불응 또는 결격 시 차순위자 선정
-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

③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

□ 사업계획 협의

- 적격자 심의 시 언급된 위원회 의견 반영 및 세부사업 내용 협의
- 협약 체결 전 일상감사 및 위탁계약서(안) 심사

□ 사업계획 협약 체결

- 협약 체결(계약내용 공증) 및 홈페이지 공개

Ⅵ 추진일정

-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: '20. 10월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일상감사 : '20. 10월
- 수탁기관 모집공고 접수 : '20. 10월
-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: '20. 11월
- 일상감사 및 계약서(안) 심사 : '20. 11월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0. 12월
 - ▶ 위탁 결정사항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, 협약서 공증
- 위·수탁 사무개시 : '21. 2. 7.
 - ※ 업무추진 일정상 지연될 경우 위탁개시 전까지 기존 수탁기관이 사무를 계속하도록 조치

붙임.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(안)

【붙임】

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- 호

「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」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(안)

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“대구어린이교통랜드”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0. .

대 구 광 역 시 장

1. 위탁 개요

가. 위탁사무 :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

나. 위탁기간 : 2021. 2. 7. ~ 2024. 2. 6.까지 (3년간)

다. 시설규모

시 설 명	위 치	규 모	주 요 시 설 현 황
대구어린이 교통랜드	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6	◦대지면적 4,958㎡ ◦건물연면적 1,504㎡ (지하1층, 지상2층)	전시실, 영상관, 기계실, 사무실 등

라. 지원예산 :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금

- 2021년도 예산안 확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

- 2020년도 운영예산 : 288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등)

※ 비용은 시비 보조를 원칙으로 하나, 미흡한 부분은 수탁법인이 일부 부담가능

2. 위탁조건

- 기존 직원 중 계속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

-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, 전대, 재위탁 금지

- 관리·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·수탁협약에 의함

3. 응모자격 및 조건

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4. 현장확인 및 설명회 : 공고문으로 같음하며 별도 설명회는 생략함

5.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0. 10월 중(15일간)

나. 접수처 :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(별관 101동 1층, ☎ 053-803-4747)

다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
라. 제출서류

- 1) 대구광역시 사무위탁신청서 1부(별첨)
- 2)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본(A4, 4매 이내) 1부
- 3) 법인·단체 소개서(연혁, 설립목적, 조직, 사업영역, 자산현황 등) 1부
 - (법인) 등기부등본(법인 인감증명 첨부), 법인정관, 허가증 사본 각 1부
 - (단체) 사업자등록증(최근 1개월 이내), 회칙,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
 - (자산현황) 부동산, 동산, 예금 등 - 증빙서 첨부
- 4) 2019년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각 1부
- 5)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(A4, 10매 이내) 1부
- 6)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 계획서 1부
- 7)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, 자체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
- 8) 기타 사업계획의 실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

※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용지 책자 10부 및 요약본 10부 제본하여 제출 및 파일 송부(kimhd0898@korea.kr)

6. 심사평가

가. 제안 설명은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PT 설명 후 질의·응답

나. 발표시간 : 15분 이내

7. 수탁기관 선정 및 발표

가. 선정방법 :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·심사

나. 선정기준

심사분야	심사항목	심 사 기 준	배점
합계			100
사업수행 능력 (45)	운영기반	▶ 사업수행의 전문성	15
		▶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	10
		▶ 재무구조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	10
	시설관리 계획	▶ 시설·설비 관리계획의 적정성	10
사업추진 이해도 (35)	목적과 취지	▶ 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	20
	발전전략	▶ 운영 비전의 우수성	15
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(20)	예산집행 계획	▶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▶ 집행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	10
	지역협력 계획	▶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효과성	10

다. 응모법인이 없거나 단독 응모하였을 경우 재공고

라.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(70점미만)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

마.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: 개별 통지

8. 기타사항

가.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나.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다. 기타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(☎053-803-4747)로 문의 바랍니다.

